

## 특수대학원 입학전형 시행내규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특수대학원(이하 ‘대학원’이라 한다)학칙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과별 전공설치)**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별 전공은 특수대학원학칙 제34조와 같다.

**제3조(지원자격)** 대학원 각 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석사학위과정

#### 가. 일반전형

- (1)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졸업예정자
- (2)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(개정 2013.12.26.)
- (3) 교육대학원 양성과정(교사자격증 취득)은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(전공)를 졸업하여야 하며 관련학과는 전공과목을 최소 38학점 인정할 수 있는 학과로 한다.
- (4) 간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간호사면허 소지자에 한한다.
- (5) 보건대학원 치위생학전공, 물리치료학전공, 방사선학전공, 작업치료학전공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면허증 소지자,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. (개정 2012.09.01., 2014.11.18)
- (6) 특수치료대학원 임상영양학과는 영양사면허증 소지자에 한한다. 다만, 학위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. (신설 2012.09.01., 개정 2013.08.30.)

#### 나. 특별전형(교육대학원에 한함)

- (1)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서 현직교사 및 교육계 종사자 등 총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
- (2) 현직교사로서 뛰어난 연구실적이 있는 자

### 2. 연구과정 : 석사학위과정 일반전형과 동일함

**제4조(편입학)**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할 경우 타 대학원의 동일학과 동일전공인 자로 하되 지원자격과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간호대학원 및

## 2-4-3~2 제2편 학 칙

보건대학원은 제3조 제1호(4),(5)에 해당하는 경우 타 대학원의 학과 및 전공과 무관하게 편입할 수 있다.(개정 2012.09.01)

1. 2차 학기 지원자는 재학기간 1학기 이상 수료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, 3차 학기 지원자는 재학기간 2학기 이상 수료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
2. 편입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2차 학기 편입인 경우 6학점 이내, 3차 학기 편입인 경우 12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, 본 대학원의 개설 과목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에 한하여만 인정한다.

**제5조**(외국인 입학) ①외국인으로서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학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(삭제 2018.09.20.)

**제6조**(지원분야) ①입학자의 전공분야는 학사과정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전공분야가 학사과정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 후 해당학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선수 과목을 15학점 이내에서 이수해야 한다. 다만, 경영대학원, 간호대학원, 보건대학원, 특수치료대학원은 예외로 한다.(개정 2012.09.01., 2018.09.20.)

**제7조**(지원절차) 각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1. 석사학위과정

#### 가. 일반전형

- (1) 입학원서(각 대학원 소정양식) 1부
- (2)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
- (3)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
- (4) 학업계획서(각 대학원 소정양식) 1부
- (5) 사진(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) 7매
- (6)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
- (7) 면허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)
- (8) 기타 각 대학원이 지정하는 서류

#### 나. 특별전형(교육대학원)

- (1) 일반전형에서 (1)~(5) 서류
- (2) 연구계획서(교육대학원 소정양식) 1부
- (3)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
- (4)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물 1부(해당자에 한함)

다.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반전형 (1)~(5) 서류, 출신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해당국 한국 총영사관에서 발행한 공증서(Apostille로 대체 가능) 1부 외에 각 대학원이 지정한 서류 추가 제출(개정 2018.09.20.)

2. 연구과정

석사학위과정 일반전형의 (1)~(5) 서류

**제8조(전형방법)**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의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

가. 일반전형

- (1) 특수대학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.
- (2) 교육대학원의 전형은 서류심사, 구술고사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.

나. 특별전형

- (1) 특별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. 단, 교육대학원은 구술고사를 추가한다.
- (2) 서류심사는 출신대학 성적, 학업계획서, 교육경력 등을 평가한다.
- (3) 면접은 교직원, 학구열, 인품, 기타 업적 등을 평가한다.

2. 연구과정

연구과정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.

**제9조(전형위원)** 각 대학원장은 서류심사, 면접 및 구술고사를 위하여 전임교수 중에서 전형위원을 3인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10조(배점 및 합격사정 기준)** ①각 특수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각 고사의 배점과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. 서류심사 -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
- 2. 구술고사 -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
- 3. 면접 - A. B. C. D 평가 중 C판정 이상(단, D판정은 불합격 처리하며 그 사유를 명시)

②서류심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에 대한 평가는 비공개로 하며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산평균에 의한다.

③교육대학원의 경우, 현직교원 및 교육행정가는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.

**제11조(합격사정)** 최종합격예정자는 각 대학원위원회에서 각 전공별 정원, 서류심사, 면접 및 구술고사 점수, 입학 후 수학(修學)의 적부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.

**제12조(합격결정)** 합격자는 대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대학

2-4-3~4 제2편 학 칙

원장이 발표한다.

**제13조**(신입생 등록)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본 시행내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규정) 본 시행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각 특수대학원별 입학전형 시행내규는 폐지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입학전형 시행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통합 시행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시행내규는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1. 이 시행내규 시행 이전에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.  
2. 이 시행내규 시행 이전에 경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경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및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이 시행내규는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내규는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시행내규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특수대학원입학전형시행내규 2-4-3~5

이 시행내규는 2018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